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('24년도)

1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 및 급여

○ 대상: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

○ 기간: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확보

○ 출산전후휴가 급여: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(통상임금 100%)하며,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(월 최대210만원)

구분	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	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
우선지원대상기업	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,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210만원)
대규모기업	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210만원)

○ 유·사산휴가 급여: 유산·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차등 부여

2 육아휴직 및 급여

○ 대상: **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**의 자녀가 있는 남·여 근로자 모두

○ 기간: 최대 1년(한 자녀에 대하여 남·여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) 지원

○ **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(아래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)**
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○ **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(②번, ③번 - 첫 3개월 특례지원)**

① **(일반)** 휴직개시일 기준 **통상임금의 80%**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 지원

② **(한부모근로자) 첫 3개월**은 **월 통상임금의 100%**(상한 250만원), **4~12개월**은 **월 통상임금의 80%**(상한 150만원) 지급

③ **(6+6 부모육아휴직제 '24.1.1.부터 시행)** 자녀 **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** 시 **첫 6개월**에 대해 **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**(통상임금 100%, 200→250→300만원)

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
○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~35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

○ 기간: 최대 1년(육아휴직 미사용시 1년 포함하여 최대 2년)

○ 급여지급: 단축된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

$$\text{단축된 최초 5시간분} = \text{통상임금 100\% (상한 200만원)} \times \frac{5\text{시간}}{\text{단축 전 근로시간}}$$

$$\text{최초 5시간 제외 나머지 시간분} = \text{통상임금 80\% (상한 150만원)} \times \frac{\text{단축 전 근로시간} - \text{단축 후 근로시간} - 5\text{시간}}{\text{단축 전 근로시간}}$$

4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휴가·휴직 등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

○ 제출서류: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(근로자), 확인서·통상임금 증빙자료(사업주)
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고용24 www.work24.go.kr) 또는 우편·방문 제출(관할 고용센터)

※ 문의

○목포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(☏061-280-0589)

○해남고용복지+센터(해남, 강진, 장흥) (☏061-530-2905)